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과 관련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향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경제적 기여도”란 국세·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등을 말한다.

3. “사회적 기여도”는 행정법규 준수 정도, 지역사회 공헌 정도를 말한다.

제3조(산정기준)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기준표

구분	지표(점수)	세부기준(안)	배점
경제적 기여 (60)	국세·지방세 납부(필수)	최근 3년 체납 사실 없을 것	필수지표 외, 각 지표 충족시 20 점 부여
	매출액 증가율(필수)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geq 업종별 평균	
	장기고용유지(20)	최근 3년 평균 고용률 \geq 100%	
	기술혁신(20)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geq 1%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최근 3년 평균 특허 출원 및 등록	
	수출액(20)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geq 10%	
사회적 기여 (40)	행정 법규 준수(필수)	최근 3년간 행정 법규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없고, 정부포상 추천제한 규정에 따른 해당사항 없음	필수지표 외, 각 지표 충족시 20 점 부여
	지역사회 공헌(필수)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 \geq 70% 또는 최근 3년 평균 고용 증가율 \geq 5%	
	산업안전 및 보건(20)	산업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 시행 여부 등	
	공공기관 협업(20)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MOU, 납품 등 협업	
종합 (100)	필수 지표를 충족하고 총점 60점 이상 획득할 것		